

#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4. 12(월)  
산 업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3. 23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0. 3. 23
- 라. 상정일자 : 2010. 4. 5
  - 제안설명 : 경제통상국장 조명조
  - 검토보고 : 산업전문위원 김복기
  - 질의 및 토론
  -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종합비즈니스센터의 목적, 설치, 사업의 내용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종합비즈니스센터의 시설을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별표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며 부대시설 사용 시 사용료 감면 근거를 정함.(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)

- 종합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 법인에 위탁 및 위탁 취소 사유를 정함.(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)
- 비즈니스센터의 운영비는 센터의 임대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(안 제8조)
-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(안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 ○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

-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근로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가 2010년 7월 개관할 예정인 바,
- 종합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.

#### ○ 다만, 시설 사용료인 임대료와 관련하여

- 안 제4조 관련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회의장 사용료가 1일(종일) 4백만원으로 책정된 바, 대회의장을 포함한 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임대료 책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,
- 향후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임대료 수입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, 운영적자를 줄이는 방안 강구와 함께
- 근본적으로 수지균형이 어렵다면 임대료 부담이 종합비즈니스센터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료 감면(안 제5조. 30% 감면)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아울러 조례 규정의 문맥을 정확히 하고자,

- 안 제3조제5호의 “센터”를 “비즈니스센터”로
- 안 제5조제3호의 “그 밖의 행정 기관”을 “그 밖의 제3조와 관련한 행정기관”으로
- 안 제6조제2항의 “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”를 “5년 이내로 한다”로
- 안 제7조제2호의 “중대한 계약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”를 “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”로
- 안 제9조제2항제1호의 “개정에”를 “개정 등에”로 제4호의 “비즈니스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”을 “그 밖에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”으로
- 안 제9조제3항의 “운영한다”를 “구성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”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○ 강창규 위원

- 안 제6조제2항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장기간 설정한 이유는?  
장기간 임대로 인한 방만한 운영이 우려됨.
- 임대료 징수해서 운영비가 충당되는 사항인가?

○ 한도섭 위원장

- 작년 9월 현지지찰시 주차장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. 대책은?

○ 김을태 위원

-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는 사항인가? 시 본청 주무부서는?
- 조례 규정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에 대한 이견은 없나?

## < 답 변 >

### ○ 경제통상국장 조명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, 연장 계약시 5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는 사항임.
- 위탁 예정인 경제통상진흥원과 5년 이내로 위탁계약하고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1~2년으로 계약하는 사항임.
- 운영비의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보전
- 지하주차장은 600면으로 자체 해소는 충분하나 행사 개최시 주변 주차에 따른 문제점은 다각도로 해소방안 강구중임.
-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, 기업지원과가 주무부서임.
- 조례 규정의 일부 수정사항에 대한 이견 없음.

## 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한도섭, 박희경, 강창규, 김성숙, 김을태 위원

## 6. 수정안 요지

- 안 제2조의 “종합비즈니스센터”를 ‘종합비즈니스센터’로 수정
- 안 제3조제5호의 “센터”를 “비즈니스센터”로 수정
- 안 제5조제3호의 “행정기관”을 “제3조와 관련한 행정기관”으로 수정
- 안 제6조제2항의 “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”를 “5년 이내로 한다”로 수정
- 안 제7조제2호의 “중대한 계약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”를 “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”로 수정

- 안 제9조제2항 제1호의 “개정에”를 “개정 등에”로 수정하며, 제4호의 “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”을 “그 밖에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하여”로 수정
- 안 제9조제3항의 “운영한다”를 “구성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”로 수정

## 7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 : 5명)

## 8. 기타 특이사항

- 없음

- 붙임 1. 수정안 1부  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 
3.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#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중 “종합비지니스센터”를 “종합비즈니스센터”로 한다.

안 제3조제5호 중 “센터”를 “비즈니스센터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3호 중 “행정 기관”을 “제3조와 관련한 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“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”를 “5년 이내로 한다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2호 중 “중대한 계약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”를 “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”로 한다.

안 제9조제2항제1호 중 “개정에”를 “개정 등에”로,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“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”을 “그 밖에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하여”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운영한다”를 “구성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”로 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설치) 인천광역시 <u>종합비즈니스센터</u>(이하 “<u>비즈니스센터</u>”라 한다)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에 둔다.</p>	<p>제2조(설치) ----- <u>종합비즈니스센터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사업) (생략) 1. ~ 4. (생략) 5. 그 밖에 <u>센터</u>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</p>	<p>제3조(사업) (제정안과 같음) 1. ~ 4. (제정안과 같음) 5. ----- <u>비즈니스센터</u> ----- -----</p>
<p>제5조(사용료 감면)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그 밖의 <u>행정 기관, 기업지원 유관 기관의 행사</u></p>	<p>제5조(사용료 감면) (제정안과 같음) 1. ~ 2. (제정안과 같음) 3. ----- <u>제3조와 관련한 행정기관, -----</u></p>
<p>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(생략)  ② 시장은 <u>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위·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(제정안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년 이내로 한다.</u></p>
<p>제7조(위탁의 취소) (생략) 1. (생략) 2. 수탁자가 <u>중대한 계약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</u> 3. (생략)</p>	<p>제7조(위탁의 취소) (제정안과 같음) 1. (제정안과 같음) 2. ----- <u>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</u> 3. (제정안과 같음)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수탁자는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, 수탁기관의 이사회가 대신할 수 있다.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<u>개정</u>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비즈니스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비즈니스센터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<u>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</u>을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<u>운영한다</u>.</p> <p>④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비즈니스센터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.</p>	<p>제9조(운영위원회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----- <u>개정</u> 등에 -----</li> <li>2. (제정안과 같음)</li> <li>3. (제정안과 같음)</li> <li>4. <u>그 밖에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하여</u> -----</li> </ol> <p>③ ----- ----- <u>구성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</u>.</p> <p>④ (제정안과 같음)</p>



#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(이하 “비즈니스센터”라 한다)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에 둔다.

제3조(사업) 비즈니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
2.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 관련 업무
3. 중소기업종합제품전시장 운영
4. 중소기업, 소상공인 및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 유치 지원
5. 그 밖에 비즈니스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

제4조(사용허가) ① 비즈니스센터를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사용료 감면)**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30% 감면할 수 있다.

1. 비즈니스센터 입주업체의 행사
2. 인천광역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3. 그 밖의 제3조와 관련한 행정기관, 기업지원 유관 기관의 행사

**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** ①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기업지원 관련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 
②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위·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**제7조(위탁의 취소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3. 공익상 위·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**제8조(운영지원 등)** ① 비즈니스센터의 운영비는 비즈니스센터 수익 재산의 임대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잉여금은 수탁자가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한다.

**제9조(운영위원회)** ① 수탁자는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, 수탁기관의 이사회가 대신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
  2. 비즈니스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  3. 비즈니스센터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4. 그 밖에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- ④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비즈니스센터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10조(지도·감독)** ① 시장은 인천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,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, 시정명령,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인천광역시 비즈니스센터 시설 사용료(제4조 관련)

구 분		임 대 료			
사 무 실	전 세	950,000원/m <sup>2</sup>			
	월 세	보 증 금	100,000원/m <sup>2</sup>		
		월임대료	5,000원/m <sup>2</sup>		
상업시설	식당, 카페, 매점	입찰 및 협의에 의해 결정			
부대시설	대회의장	종일	4,000,000원		
		오전	1,500,000원		
		오후	2,500,000원		
		야간	1,500,000원		
	회의실	대	4시간 이하	150,000원	
			4시간 이상	200,000원	
		중	4시간 이하	120,000원	
			4시간 이상	170,000원	
		소	4시간 이하	100,000원	
			4시간 이상	150,000원	
	세미나실	대	4시간 이하	200,000원	
			4시간 이상	300,000원	
		중	4시간 이하	150,000원	
			4시간 이상	220,000원	
		소	4시간 이하	100,000원	
4시간 이상			180,000원		

비고) 사무실, 상업시설 관리비용은 별도 부과